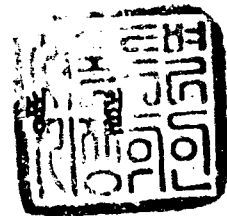


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폐지 규정

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1995년 6월 26일

서울특별시장 최



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

1. 폐지 이유

- 가. 지방자치법 제9조및 제10조와 동법시행령 제8조및 제9조에 시와 자치구의 사무를 구분하여 규정하고, 동법 제132조로 지방자치단체는 그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위임된 사무(이를 위임한 국가,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)에 관하여 경비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,
- 나. 동 규정은 지방자치법령상 명문으로 규정한 시, 구사무중 구사무에 대하여 시 부담을 규정하거나, 시위임 사무에 대하여 구의 경비부담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,
- 다. 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임에도 상위법령이나 조례의 구체적 위임에 근거하지 않고 제정된 시내부의 혼령적 규정으로 자치구에 대한 기속력이 없고, 앞으로 동규정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규정을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을 폐지

서울특별시훈령 제 819 호

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폐지규정안

서울특별시와자치구간의재정부담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●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에 관한 규정 [1990. 7. 23
훈령 제707호]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지방자치법 제9조, 제10조, 동법 시행령 제8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의 규정에 외기 소관사무를 수행함에 따라 업무분야별로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통하여 효율적인 시정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의 재정부담 기준에 관하여 법령, 조례 및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재정부담의 종류와 기준) ①서울특별시(이하 "시"라 한다)와 자치구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업무분야별 경비의 기준(이하 "재정부담기준"이라 한다)은 별표1과 같이 한다.

②서울특별시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와 자치구의 재정형편상 또는 시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추가 부담을 하거나 또는 추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재정부담에 따른 재원의 종류) ①시장과 자치구청장이 소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시비 및 구비로 구분 부담함에 있어서는 각각 다음 각호에서 정한 재원을 사용할 수 있다.

1. 서울특별시비

가.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

나. 기금

다. 자치구에 대한 특별교부금 및 재정보조금

라. 기타

2. 자치구비

가.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재원

나. 기금

다. 기타

부 칙

이 규정은 반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표1>

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부담 기준<제3조 관련>

소관	사무분야	경비부담구분	
		서울특별시비	자치구비
내부국	1. 인건비	○시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경비	○자치구산하 공무원의 급여 및 관련경비
	2. 영선사업	○시영선사업	○구영선사업
	가. 구청사전립	○구영선사업 일부 - 신규전립: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 증·개축:소요액의 50%	- 신규전립:부지매입 및 건축비의 50% - 증·개축:소요액의 50%
	나. 구민회관	- 부지매입, 신축비 50% - 증·개축 50%	- 부지매입, 신축비의 50% - 증·개축 50%
	다. 구외회의사당	- 신축 · 건축비 50% - 증·개축 50% - 임차 50%	- 신축 · 부지확보 100% · 건축비 50% - 증·개축 50% - 임차 50%
	라. 동청사전립 및 증·개축	- 신설에 따른 신규동청사 전립비 50%	- 신설에 따른 신규동청사 전립비 50% - 확장, 이전에 따른 신축 및 증·개축비 전액
	3. 통반장 운영, 지원 격려	-	통반장 수당지급 및 격려 경비전액
	4. 공직선거	○시의원 선거경비	○구의원 선거경비
	5. 호적 및 주민등록 관리	○호적 및 주민등록 총괄 관리	○호적 및 주민등록 발급 관리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관할청 지정) 공공 시설의 관할청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가로수와 녹지대는 도로의 관할청이 관리하고 한강상 교량 인터체인지의 관할경계는 별도로 정한다.</p>	<p>제3조(관할청 지정) 공공 시설의 관할청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한강상교량 인터체인지의 관할경계는 별도로 정한다.</p>